



LIFE & MISSION AGENCY
Canadian Ministries

Stipend & Allowances
2013 년 11 월

Benefits, Pension Fund, and membership in the Group Insurance Plan

사례금(Stipend) · 목회 활동비(Allowances) · 건강 및 치과 보험 (Benefits) · 연금 펀드(Pension Fund) · 그룹 보험 제도(Group Benefits plan)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노회에서는 노회의 관할 하에 있는 각 교회 및 사역지의 재정 현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교회 및 사역지의 재정 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액(standards and allowances)에 알맞게 목회자의 사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노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각 교회에 조언을 주며, 필요한 경우 안내 및 지도를 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회에서는 각 교회의 목회자에게 연금 펀드 (Pension Fund) 및 그룹 보험 제도 (Group Benefits plans)에 대한 총회의 규정을 상기시켜 주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개척교회 사역지(New Congregational Development), 갱신 사역지(Renewing Ministries), 특수 사역(Specialized Ministries), 미자립 사역지(Sustaining Ministries)에 캐나다 국내사역부(Canadian Ministries)를 통해 보조금(Grants)이 지원되는 경우, 교단 기준 및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사역지에서 사례금이 적절하게 지불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공제 금액 (CPP, EI 등)이 정확히 계산되었고 그에 따라 차질없이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캐나다 국내사역부(Canadian Ministries)를 통해 지원금을 보조받는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 캐나다 장로교회 교단의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 기관 소속의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선교사가 총회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액을 따라 적합한 금액의 사례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Acts and Proceedings 에 매년 개재되는, 최소 사례금 및 목회 활동비에 관한 총회 의회(Assembly Council)보고 내용 참조]
2. 캐나다 각 주정부의 연금 제도 규정에 준한, 회원 및 고용인 연금 부담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위 문서는 영어 원문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위 번역된 문서와 영어 원 문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document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Where there is a discrepancy, the original English document will be consulted.